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법적 근거와 쟁점*

Legal Basis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and Related Issues

이영한**

[국문요약]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법화성을 인정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준비금과 지급준비금의 불확실한 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계좌 관리 위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자 지급 및 마이너스 금리 부과 등을 위하여 한국은행법의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정착을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개정, 은행법 등 감독규제의 건전성 관련 규정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규상의 개정 또한 필요하다.

핵심주제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I. 서론

현금 없는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술 발전의 혜택이다. 이미 많은 분야에서 전자화 된 금융거래가 활발하다. 그 중에서 특히 블록체인을 활용한 분산원장 기법(DLT)이 가장 고도화되고 안정적인 기술로 여겨지는데, 그 때문에 디지털화폐 발행에 있어서도 DLT가 각국 중앙은행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지급결제 관련 IT기술의 발전과 함께 P2P를 기반으로 한 DLT의 활용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급측면에서 디지털화폐 발행에 필요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여건이 조성되었다. 한편 수요측면에서는 모바일기기의 보급과 무선인터넷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을 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었다.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은 인터넷에서 서로 알지 못하는 다수의 상대방과 거래할 때 중개기관의 개입 없이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탈중앙화된 정보공유

* 이 글은 2021년 3월 25일(목)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가 주최한 정책세미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동향과 한국의 CBDC 도입 방안·과제’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 덴톤스리 법률사무소 시니어변호사, Tel: +82-2-2262-6000, E-mail: younghan.lee@dentons.com

저장기술(Decentralized shared-information storing technology)이다. 분산원장 기술은 신용도가 높은 제3자인 ‘금융중개기관(상업은행)’의 도움 없이도 자금이체를 가능’하도록 하여준다. 즉 분산원장 기술의 등장은 전통적으로 다자간 고비용이 소요되는 자금이체 시스템에서 금융중개기관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큰 폭의 원가절감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전통적인 중앙집중형 금융시스템은 신용도가 높은 금융중개기관만이 원장(Ledger)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금융거래방식인 반면에, DLT는 모든 개인 간의 거래를 포함하는 원장을 모든 구성원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분산저장시스템’인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언제든지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장부를 갖고 있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변조불가능성을 달성하는 과정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DLT는 특정시간 단위로 블록이라는 단위의 거래장부를 생성한다. 이후 이를 모든 구성원에게 전송하여 다수의 구성원이 거래타당성을 검증하고 전송된 블록의 유효성을 승인할 경우 모든 구성원이 각자 분산관리하는 원장 즉 기존의 블록데미에 새로운 블록을 체인의 형태로 연결해 준다. 이러한 연쇄적인 과정을 소위 블록체인(block chain)이라 하는데, 이와 같이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내용의 분산 원장을 갖게 하면 변조불가능성이 달성되는 것이다. 전통적인 중앙집중형 금융시스템에서는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매우 높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DLT에서는 이 비용이 배제되므로 비용절감의 효과가 상당하다. DLT는 신뢰가 없는 네트워크상에서 신뢰비용을 최소화하고 익명의 상대방과 거래할 수 있는 기반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DLT는 신뢰가 없는 네트워크상에서 신뢰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익명의 상대방과 거래할 수 있는 기반기술이므로, 본질적으로 금융중개기관을 배제하는 탈중개화의 성질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DLT의 탈중개화 특성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증권매매 후 청산과 결제에서 DLT를 사용하게 되면 거의 실시간 결제가 가능하므로, 결제시간과 거래상대방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예치증거금이나 담보 관련 비용의 절감도 가능하다. 한편 증권의 거래 시 증권회사, 청산기관인 한국거래소, 중앙예탁/결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등 복수의 중개기관에 나뉘어져 있는 복수의 개별적인 원장들이 사실상 불필요해진다. 이는 DLT가 기존의 중앙집중형 중개기관의 역할을 대신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DLT가 거래의 즉시결제를 실현하는 경우,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이 사라지므로 중앙 청산기관과 결제기관의 역할도 사라지게 된다.

이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이다. 전세계적으로 DLT 기술을 활용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문제되고 있고, digital dollarization과 financial inclusion의 문제로 인하여 도입이 많은 나라들에서 시작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도입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으므로, 법적인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II. 한국은행법

1.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법화성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디지털 형태의 ‘중앙은행 화폐’이므로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법화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국은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형태의 중앙은행 발행 화폐에 법정 화폐(Fiat Currency)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부여되는지가 쟁점이 되는 바, 현행 한국은행법 48조, 53조 2항에서는 한국은행권과 주화에 대해 법화로서 무제한 통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직접운영 방식¹⁾으로 도입하는 경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권이 화폐 발행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에 있게 되는 바, 다른 실물화폐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어 법정화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된다.

다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간접운영 방식²⁾으로 도입하게 되면 법화성 부여와 관련하여 약간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채무이행 등을 위한 자금이체를 함에 있어 예금과의 구조적 유사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도 준비금이 전부 예치되고, 은행은 단순 업무를 수행한 기관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법화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인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특성으로 “현금 등 법화와 일대일 교환이 보장된다”라고 기술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법화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 서술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CBDC는 법화로서 한국은행권 및 주화와 같은 법화와 당연히 등가 교환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기존 법화와의 등가교환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현금과 같은 수준의 강제통용력을 실제로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상거래 지급 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금과 달리 카드나 모바일 기기, POS 단말기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장비들이 구비되지 않거나, 거래당사자중 일방이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수수를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법화성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조항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노르웨이 중앙은행도 동일한 취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³⁾

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발행됨에 있어서 직접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형식을 의미한다.

2) 중앙은행이 금융기관 등의 중개기관에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고 중개기관이 이용자에게 교부하는 형식을 의미한다.

3) Norges Bank,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2018(No. 1), p.43 참조

2.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의 법적 근거

현행 한국은행법 제49조에서는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받아 어떠한 규격, 모양 및 권종의 한국은행권 주화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그 구현방식에 있어 규격/모양/권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디지털 화폐를 위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위 법조문을 기초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일반적으로 한국은행권은 한국은행이 발행하여 현금으로 쓰이는 지폐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물리적 형태 없이 전자적으로만 기록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한국은행권 제49조의 한국은행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방식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나 법인 등 민간과 예금 대출 거래를 하거나 민간의 채무를 표시하는 증권을 매입할 수 없다(한국은행법 제79조). 직접운영 방식으로 운영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다만 한국은행법상 계좌 전자지갑을 개설하는 조항이 신설된다면, 79조상 예외사유로서 이 법에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는 있다.

3.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준비금과 지급준비금

또한 지급준비금과 관련하여서도 일반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금과는 달리 CBCD가 강제통용력을 가진 법화로서 무제한 통용되기 위한 것이어서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준비금은 법화라는 측면에서 은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계좌에 예치된 금액의 100%를 예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준비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4.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계좌 관리 위임

한편 단일원장 간접운영방식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하게 되어 예금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대량 바꾸게 되면, 은행으로서는 지급준비금 측면에서 불리하므로 수신성 자금 감소로 은행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를 기피할 가능성이 생기므로, 비은행 금융기관 또는 비금융기관으로 이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 가능하다.

5. 이자 지급 및 마이너스 금리 부과

이자지급 및 마이너스 금리부과 또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법체계상 이자 지급에 대해서도 한국은행과 개인 기업이 개설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계좌 또는 온라인상 전자지갑에 대해 소비임치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근거 규정이 필요하고,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은행 CBDC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 부과는 법적 근거 마련 등 헌법상 기본권 제한 요건을 지켜야 하지만, 은행 예치 CBDC의 경우 소비임치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예금거래약관에 마이너스 금리에 관한 내용이 미리 삽입될 것이므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박선종·김용재·오석은(2018),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시 법률적 쟁점” p.26)가 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을 수 있음. 즉 한국은행이 단일원장-간접운영 방식으로 CBDC를 도입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은행 CBDC 계좌는 개별 국민이 원활한 경제 생활을 누리기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현금을 폐지하고 CBDC만 발행되는 경우 국민은 은행 CBDC 계좌를 반드시 개설하여야 한다. 따라서 CBDC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 부과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바탕을 둔 사법(계약법)적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국민의 재산권에 제약을 가하는 공법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은행 CBDC 계좌에 대하여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려면 중앙은행 CBDC 계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과잉금지의 원칙 등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III. 금융관련 법규상 쟁점

1. 예금자 보호법 여부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기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 위 법상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단일원장 직접운영 분산원장 방식인 경우 큰 문제가 없고, 간접운영이라고 하더라도, 100% 준비금이 적립된다면 보호에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적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국민의 금융편의 도모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동법 제1조). 동법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1항).

여기서 금융회사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인데(동법 제2조 제3호 가목), 한국은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나 전자지급거래를 실행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욱이 향후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더라도, 한국은행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금융업자나 전자금융업보조자가 아닌 것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전자금융거래나 전자지급거래를 상행위로서 반복하는 영리행위의 주체인 상법상의 상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법상으로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이고(제2조),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제4조 제1항), 한국은행의 업무수행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제5조)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즉 한국은행은 사경제 주체인 상인으로서의 전자금융업자와는 전혀 차별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전자화폐와 본질적으로 그 취급을 달리하는데, 전자는 법정 통화에 해당하지만 후자는 상인이 상행위의 일환으로서 발행한 가치저장수단의 하나에 불과하다.

다만 그럼에도 단일원장-간접운영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개인 기업의 은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계좌를 통한 자금이체에 대해서는 “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적용대상이며,” “은행이 제공하는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동법이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그 전자자금이체에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추가적으로 침해사고시 통지대상에 한은을 추가한다든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약관 제정 및 변경 시 한국은행 앞 보고를 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은행법 등 감독 법규의 건전성 규제 관련

은행의 건전성 규제 조항과 관련하여서도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한은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는 경우 일부 은행의 고객 예금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전환되면, 원화예수금에 대한 원화대출금 비율 준수 또는 부족자금 조달을 위해서 금리 인상, 대출에 대한 자산운용 규모 감축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신용경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건전성 규제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IV. 개인정보보호 법규상 쟁점

분산원장방식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는 경우, 한국은행이 개인 기업에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계좌 또는 전자지갑을 개설하고 이를 통한 자금이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집중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익명성을 유지하는 기존 가상자산의 방식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익명성을 기반으로 운용할지 여부와 거래내역이 누적되면서 자연스럽게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개인정보 집중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단일원장 간접운용 방식을 취하더라도 여전히 시스템 구조에 따라 개인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거래내역을 취득할 수 있다.

나아가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여 ‘직접유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서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개인정보 등 보호의 문제는 실물화폐를 발행할 경우 개인정보 등 보호의 문제보다 더욱 심각하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 보호 대상 개인의 범위가 디지털화폐를 보유하는 국민 전체이므로, 단지 후자의 경우 즉 실물화폐를 예치하는 고객만을 대상으로 할 때와 비교할 때, 너무도 보호의 대상자가 넓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면서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고 처리할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의 내재적인 제약에 구속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한편,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독점적으로 발행하고 유통할 때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문제점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이와 극단적인 스펙트럼에 서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거래를 모델로 하여 익명성과 비밀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때에는 익명성의 제고로 비밀스러운 거래가 늘어나면서 자금세탁, 무기 거래, 마약 밀수, 매춘자금 제공 등 불법거래가 횡행할 수 있고 Anti-Money Laundering 법제 이전의 과거로 회귀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디지털화폐에 대한 익명성 부여 정도는 정책적인 선택의 문제로 생각된다. 익명성 강화는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 발생가능성과는 정의 함수관계에 있는 반면, 사생활침해와는 역의 함수관계에 있다. 예컨대, 소액과 거액을 구분하여 소액거래의 경우 익명성을 보장하여 최대한 사생활침해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 거래거래에는 익명성이 아닌 투명성을 강조하여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못하도록 이원화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V. 분산원장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분산원장 방식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하는 경우 전자지갑 거래검증기관 등과 같은 특별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 운영이 요구되므로, 이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분산원장 방식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는 경우 다른 방식과 달리 전자지갑이 요구되고, 거래검증기관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요구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지갑의 경우, 한국은행과 전자지갑 보유자(개인·기업)간 권한과 책임,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대응절차와 책임 문제를 기재하되, 거래안전보장을 위하여 한국은행에게 무과실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견해가 상당수 존재한다.

또한 거래검증기관을 설치하게 된다면, 그 설치 근거·요건과 조직·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거래검증기관의 권한과 책임, 한국은행의 거래검증기관에 대한 정보접근권(자료제출요구권, 검사권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분산원장 네트워크에 대한 한국은행의 관리 책임 범위, 사고발생시 대응절차, 유관기관 간 협력 등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I.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특정금융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한국은행이라는 명확한 발행 주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의 독점적인 발권력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발행주체가 없거나 중앙은행의 독점적인 발권력에 근거하지 않은 통상의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특정금융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상 규제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개정 특정금융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라고 하여 발행주체 유무와 관계없이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에 제외되는 것을 열거하고 있는 제2조 제3호 단서 각목의 어느 하

나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추가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특정금융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 제 4조의2) 등 현금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온라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그 소유자와 거래내역이 전자기록으로 명확하게 남게 되므로 현재의 은행 예금계좌 및 계좌 간 거래와 동일하게 자금세탁방지규제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도 있다. 최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발행 시점에 현금을 대가로 이를 취득하거나, 현금으로 상환 받을 수 있다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 등 현재의 자금세탁방지규제가 예상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주화와 한국은행권 간의 교환이나 권종 간 교환과는 달리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교환규모가 클 경우에는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개인 또는 법인이 신규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계좌 또는 전자지갑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중개기관은 해당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해당 개인이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 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강화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VII.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국제사법상 문제

법화의 종류의 구성과 계산 단위의 지정 등은 원칙적으로 통화 소속국법(*lex monetae*)에 따를 사항이다. 즉 화폐의 정의 및 조직에 관하여는 계약의 준거법이 어느 국가의 법이든 통화 소속국의 통화법규에 의하게 된다. 다만 채무의 범위에 따른 통화의 사용(또는 효력), 예컨대 통화의 해석, 자국통화 사용의 강제, 명목주의와 가치보전조항의 허용성, 현실지급조항의 의미와 효력, 대용급부 청구권의 인정 등은 채무의 준거법에 따를 사항임. 채권의 준거법은 채권 자체의 실질적 내용을 정하는 법으로서, 발생원인에 따라 국제사법이 정하는 원칙에 의하여 정하여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VIII.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형사법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하여는 절도죄(제329조), 횡령죄(제355조 제1항), 장물죄(제362조)와 같은 재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의 경우 행위객체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이 함께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 한편 손괴죄(제366조)는 행위객체로 재물 뿐만 아니라 ‘전자기록’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전자기록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 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IX. 결론 -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법률적 제도의 구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시장에서 법화로서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유통되기 위해서는 압류, 강제집행 및 몰수 등 현행 법적 강제제도들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도 적용되도록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중개기관이 전자지갑이나 개인키를 확보하지 않고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압류, 현금화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 한국은행법에 따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법화성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현금과 동일하게 보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구체적인 강제집행의 방법이 확보되어야 실제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기존 금융시스템에 안착하는데 무리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한국은행(2014), “한국의 지급결제제도.”
- _____(2016a), “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지급결제조사자료 2016-2.
- _____(2016b), “분산원장 기술의 현황 및 주요 이슈.”
- _____(2017), “한국의 통화정책.”
- _____(2018a), “2017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결과,” 지급결제조사자료 2018-1.
- _____(2018b), “2017년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결과 및 시사점,” 지급결제조사자료 2018-3.
- _____(2018c),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 Ali, R., Barrdear, J., Clews, R., and Southgate, J.(2014), “The economics of digital currencies,” *Bank of England Quarterly Bulletin*, Q3.
- Andolfatto D.(November, 2015), “Bitcoin and Central Banking,” <https://andolfatto.blogspot.com/2015/11/bitcoin-and-central-banking.html>
- _____(2018), “Blockchain, Cryptocurrencies and Central Banks,” Speech at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 Androulaki E., et al.(2018), “Hyperledger Fabric: A Distributed Operating System for Permissioned Blockchains.”
- Bacchetta P.(2018), “The Sovereign Money Initiative in Switzerland: An Economic Assessment,” *Swiss Journal of Economics and Statistics*.
- Baradaran M.(2014), “It’s Time for Postal Banking,” *UGA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2014-07.
- Barrdear J. and M. Kumhof(2016), “The Macroeconomics of Central Bank Issued Digital Currencies,” *Bank of England Staff Working Paper*, 605.